

예 천 군



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제1409호 2022. 12. 15.(목)

선 람	기 관 의 장

공 고

○ 보상계획공고(예천군 공고 제2022-1517호)

회 람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 행 예천군 편찬 기획감사실(전화 650-6066)

보 상 계 획 공 고

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『예천~예천IC간도로 4차로 확포장공사』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(묘지포함)에 대한 보상계획을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,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붙임의 토지 등 내역서를 열람하신 후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2. 12. 15.

예 천 군 수

1. 사업개요

가. 사업시행자 : 경상북도지사

나. 사 업 명 : 예천~예천IC간도로 4차로 확포장공사

다. 위 치 : 예천군 예천읍 통명리, 보문면 신월리 일원

라. 사 업 기 간 : 착공일로부터 36개월

2. 보상대상 : 상기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(묘지포함) 등 일체 * 붙임문서참조

3.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: 2022. 12. 15. ~ 2022. 12. 30. (15일간)

4. 열람장소 및 이의신청 : 예천군청 건설교통과 도로팀(054-650-6335), 서면에 의함

5. 보상시기 : 2023년 3월부터

※ 보상금액 및 구비서류 등은 손실보상 협의요청서와 함께 개별 통지

- 근저당, 가압류 등과 같은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사전 말소 후 협의보상 가능

6. 손실보상 계획

가. 협의기간 : 손실보상 협의 통지 후 30일간

나. 협의장소 : 경상북도 예천군청 도로팀(☎054-650-6335)

(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, 예천군청 3층 건설교통과)

다. 보상방법 :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

라. 감정평가업자 선정 :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6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선정하는 감정평가업자 이외에 토지 소유자가 감정평가업체를 추천할 수 있으며, 소유자추천 감정평가업체는 보상대상(국·공유지 제외)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신청할 수 있음.

◀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▶

토지 소재지	편입 지번	편입면적 (㎡)	토지 소유자			소유자 확인	전화번호 (주택 또는 휴대폰)	감정평가업자
			주 소	주민등록번호	성 명			

※ 소유자 확인란에는 자필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.

소유자 사망이나 거소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그의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.

마. 보상절차 : 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 등 소정절차 완료 후 보상금 지급

바. 구비서류

- ① 인감증명서 2통
- ② 주민등록초본 1통(주소 이력 포함)
- ③ 본인의 예금통장(손실보상금 수령용) 사본 1부
- ④ 계약서, 청구서, 공익사업 용지 협의 취득서, 승낙서 각 1부
- ⑤ 문중 소유 토지의 경우 문중회의록(대표자 선임, 재산처분에 관한 사항 기재) 및 문중규약 각 1부
- ⑥ 미등기 토지인 경우, 소유권 보존등기 선행
- ⑦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토지인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선행

- ⑧ 등기부상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해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7. 기타사항

가. 편입면적은 실시설계에 따른 예상면적이며 보상 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열람결과 대상 물건 또는 소유권 등 권리관계가 열람한 조서의 내용과 다른 경우 열람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.

나. 개인별 보상 대상 토지 및 물건 내역, 보상금액, 보상절차, 보상협의 및 구비 서류 등 구체적인 사항은 손실보상협의요청서와 함께 추후 보상 착수 시기에 별도(분할측량, 감정평가 완료 후)로 개별 통지하여 드릴 계획이며,

다. 기타 편입 물건의 손실보상에 대한 문의 또는 이의가 있으신 분은 **예천군청 건설교통과 도로팀(☎054-650-6335)**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